

4. 의견청취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서울 약수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사업예정지는 의견 청취 공고일로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위제한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02-3396-557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도심복합사업처 도심복합계획부(☎02-6006-08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540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재정비촉진지구 최초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2009.03.19.)로 재정비촉진계획 최초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19호(2014.03.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어, 중구 고시 제2017-31호(2017.04.26.) 및 중구 고시 제2021-40(2021.04.07.)호로 각 사업시행 계획인가된 세운3-2구역 및 세운3-3구역에 대하여,
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40(2023.12.07.)호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구역통합) 결정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공람기간 : 2024.05.17.(금) ~ 2024.05.30.(목) (14일간)

2. 공람장소 : 중구청 도심정비과(☎3396-5752)

3. 공람내용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175-1 일대
- 시행면적 : 10,575.1㎡ (대지면적 : 8,240.3㎡ / 정비기반시설면적 : 2,334.8㎡)

다.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더센터시티제삼차주식회사 대표 박래영 외 1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12층(삼성동, 파르나스타워)

라. 정비사업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

마. 사업시행인가일

- 세운3-2구역 : 2017.04.26. / 세운3-3구역 : 2021.04.07.

바. 사업시행계획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3-2구역	3-3구역	
사업명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 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서울시 중구 입정동 175-1 일대 (5,020.3㎡)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202 일대 (5,561.3㎡)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175-1 일대 (10,575.1㎡)
사업시행자 변경	더센터시티제삼차 주식회사 대표 박래영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대표 이국형	더센터시티제삼차주식회사 대표 박래영 외 1인
사업시행자 주된 사무소 변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12층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7층 (대치동, 섬유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12층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사업기간 변경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54개월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72개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
건축계획 변경	지하7층/지상20층, 연면적 47,495.01㎡, 업무시설 등	지하8층/지상20층, 연면적 58,183.62㎡, 업무시설 등	지하9층/지상36층, 연면적 170,197.39㎡, 업무시설 등

※ 기타 변경사항 : 별첨 구비서류 참고

4. 관계도서 : 세운 3-2,3구역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을 위한 관계도서를 중구청 도심정비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내방하시어 공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람도서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이며,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 및 관계법령과의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